

비교과교육관리위원회 운영규정

제 정 2020. 9

제1조 (설치 및 구성) ① 우송교양대학에서 총괄하는 비교과교육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우송교양대학 비교과교실에 <비교과교육관리위원회>(이하 ‘위원회’라 칭함)를 둔다.
 ② 위원회는 비교과교실 책임교수, 우송교양대학장, 교무처장 및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9인 이내로 한다.

제2조 (위원장)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우송교양대학장이 맡는다.
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③필요할 경우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총장이 위촉하는 교직원으로 선임한다.
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,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집행한다.

제4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한다.
 1. 우송대학교의 각 대학/학부/학과 및 부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비교과교육활동을 심의, 총괄 조정한다.
 2. 선도적으로 비교과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해당 대학/학부/학과 및 부서에 그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.
 3. 원활한 비교과교육활동을 위해 대학본부에 인적 물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 4. 학년도 별로 비교과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본부에 제시한다.
 5. 기타 우송대학교의 비교과교육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.

제5조 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.
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기타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